

의안번호	제 51 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10월 일 (제 335 회)

**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
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연철흠 의원 등 7명
발의연월일	2014년 10월 2일

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

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연철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4년 10월 2일

발의자 : 연철흙, 임희무, 엄재창
김영주, 윤은희, 최광옥
임헌경

1. 개정이유

지방계약법 시행령 조문의 오기 정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
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2. 주요내용

가. 지방계약법 시행령 조문의 오기 정정(안 제4조)

- 영 제25조제1항제4호카목 ⇒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

나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개정에 따른 심의제외 대상의 변경(안 제4조)

-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

⇒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

다.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- 제1조의 약칭 생략.

- ~의 규정에 의한 ⇒ ~에 따른

- 당해 ⇒ 해당
- 기타 ⇒ 그 밖의
- 범위 안에서 ⇒ 범위에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안전행정국 회계과와 협의함.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생략

(2) 규제심사 결과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.

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감독 대상공사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계약심의위원회) ①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충청북도경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가 위촉한 자로 한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(부교수·조교수를 포함한다)로 재직중에 있는 자
2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
3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
4.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

5.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
 6.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·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
- 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 중 “영 제25조제4호카목에 의한”을 “영 제25조제4호차목에 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5인 이상 10인 이내”를 “5명 이상 10명 이내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7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 본문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6월”을 “6개월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“이라 한다)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“이라 한다)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의 구성·운영과 법 제16조제2항, 제4항 및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감독자 감독 대상공사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감독 대상공사 및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계약심의위원회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충청북도경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자로 한다.</p>	<p>제2조(계약심의위원회) ①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충청북도경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“라 한다)가 위촉한 자로 한다.</p>
<p>1.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(부교수·조교수를 포함한다)로 재직 중에 있는 자</p>	<p>1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(부교수·조교수를 포함한다)로 재직중에 있는 자</p>

<p>2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<u>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</u></p>	<p>2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<u>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</u></p>
<p>3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</p>	<p>3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</p>
<p>4.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</p>	<p>4.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</p>
<p>5.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</p>	<p>5.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</p>
<p>6.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·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</p>	<p>6.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·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</p>
<p>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으로 한다.</p>	<p>③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 사무관으로 한다.</p>
<p>제4조(기능) ① (생략) 1~3. (생략) 4. 영 제25조제1항제4호카목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5~6. (생략)</p>	<p>제4조(기능) ① (현행과 같음) 1~3. (현행과 같음) 4.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5~6. (현행과 같음)</p>
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	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

제6조(소위원회) ① ~ ② (생략)

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북도경리관이 되며,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임하되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(생략)

제7조(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) ① (생략)

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심의결과 반영) 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

제6조(소위원회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북도경리관이 되며,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임하되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9조(심의결과 반영)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원의 해촉)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

<p>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</p> <p>2. (생략)</p> <p>3. <u>기타</u>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</p>	<p>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</p>
<p>제13조(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)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」(이하 “여비조례”라 한다)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(공무원 5급상당)를 예산의 <u>범위 안에서</u>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히 현지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)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」(이하 “여비조례”라 한다)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(공무원 5급상당)를 예산의 <u>범위에서</u>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히 현지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5조 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4. 특정인의 기술·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·구조·품질·성능·효능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
차.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